

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

2024. 12. .

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. 9. 25, 이언주의원 등 10인

나. 회부일자 : 2024. 9. 26.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제418회 국회(정기회)

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(2024. 11. 20.) 상정 · 제안설명 ·
검토보고 · 대체토론 · 소위원회

제1차 중소기업소위원회(2024. 11. 22.) 상정 · 심사 · 의결(대안반영
폐기)

제10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(2024. 11. 28.) 상정 · 소위 심사보고 ·
의결(대안반영폐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이언주의원)

현행법은 진입장벽이 낮아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그 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 또한 동 법 제8조에서 “대기업 등은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·개시 또는 확장해서는 아니된다.”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 추천에서 지정까지 최장 6개월이 소요되고, 소상공인단체의 신청부터 동반성장위원회 추천까지 최장 9개월이 소요되어 최장 15개월 동안 대기업의 인수, 개시 또는 확장을 막을 수 없음.

이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업종 및 품목에 대해서 그 신청일부터 지정 여부를 심의, 의결한 날까지 대기업 등이 인수, 개시 또는 확장을 하지 못하게 제한하려고 함(제8조제2항 신설 등)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유인규)

이언주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」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신청된 업종·품목에 대하여 그 지정 여부와 관련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대기업등이 해당 업종·품목의 사업을 인수·개시 또는 확장하지 못하도록 금지조항을 신설하고, 이를 위반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.

개정안에 따라 대기업등의 사업 인수·개시 및 확장을 선제적으로 금지함으로써 해당 업종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영세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생존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.

다만, ‘신청’을 근거로 한 사업 참여제한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이 될 가능성만으로 대기업등의 영업활동을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, 업종·품목별 사안에 따라 신청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과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에 적용되는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의 일시정지 권고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 보임.

4. 대체토론 요지

없 음.

5. 소위원회 심사내용

(소위원장 : 박성민 위원)

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되, 이언주의원, 오세희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총 2건의 「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」을 통합·조정한 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음.

대안의 주요내용은 기존 적합업종 적용 기간이 만료되기 1년 6개월 전부터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시기를 6개월 앞당기고,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대기업등에 대하여 해당 사업의 인수·개시 또는 확장을 제한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,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, 이행명령 및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.

6. 심사결과

개정안의 취지를 위원회 대안에 반영하고,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(대안반영폐기).